

『서울특별시 환경보전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 
**제안설명**

□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1선거구 출신 이영실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 환경보전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 
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『서울특별시 환경보전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,

최근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 
시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으나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·

시행하는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만으로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학사고에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.

- 이에 따라,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응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자 합니다.
  
-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,  
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학사고 비상대응 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  
-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  
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해당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마련하였고,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.
  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보건복지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